

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1304
----------	------

2020년 2월 24일
환경수자원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0년 2월 5일, 권영희 의원 외 9명
- 나. 회부일자 : 2020년 2월 12일
- 다. 상정일자 : 제291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
(2020년 2월 24일 상정·수정안 가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 설명자: 권영희 의원)

- 가. 제안이유
 - 「기후변화기금은 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출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나, 조례에서 이를 “출연금”으로 명시하고 있어 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」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예산과목으로 변경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조례 제4조제1호 “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”을 “시 일반회계로부터의 기금전출금”으로 각각 변경함.
 - 출연금: 지자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
 - 기금전출금: 법령 및 조례에 의해 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는 기금에 전출하는 경비
- 제명 등 띄어쓰기 기준에 따라 정비함(안 제7조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9조의2,

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없음

다. 기 타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4. 검토보고 요지 (수석전문위원: 이재효)

가. 개요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」에 따른 용어 및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조례 제명 등의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검토의견

- 기후변화기금은 온실가스 저감,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,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도시가스 공급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를 근거로 운용하고 있으며,

주요 재원으로는 시 일반회계 전입금, 기금 운용 수익금, 국가 및 은행 차입금,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주식배당금 및 온실가스 배출권 매각 수입 등이 있음.

- 본 기금은 행정안전부의 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」에 따라 운용됨. 2020년 기준(2019.7)에 따르면 기금의 주요 수입항목으로 전입금, 보조금, 차입금, 융자금 회수, 예탁금 원금회수, 예치금 회수, 예수금,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등 총 9가지로 구분하고 있음.
- 현행 조례에 따르면 서울시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지원하는 예산을 “출연금¹⁾”으로 정의하고 있는데, 본 개정안에서는 이를 “기금전출금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.

1)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하여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

- 그러나 “기금전출금”은 일반회계에서의 세출항목에 적합한 용어이고, 기금 운용계획 수립기준에서 이미 “전입금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기준에 맞추어 수정 보완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.
-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용어의 띄어쓰기 정비 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음.

<세입과목 범례>

구 분		과 목
수입	전입금	공기업특별회계전입금(721-01), 공사·공단전입금(721-02), 기타회계전입금(721-03), 기금전입금(721-04),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(721-05), 자치단체간 부담금(222-01)
	보조금	보조금(500)
	차입금	국내차입금(610), 국외차입금(620)
	융자금회수 (이자포함)	민간융자금회수수입(713-01),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(216-02), 공사·공단 등 융자금 회수수입(713-03), 공사·공단 등 융자금 이자수입(216-04), 시군구 융자금회수 수입(713-04), 시군구 융자금회수 이자수입(216-06), 통화금융기관 융자금(713-02), 통화금융기관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(216-03)
	예탁금원금회수	예탁금원금회수(722-03)
	예치금회수	예치금회수(714-01)
	예수금	예수금수입(722-01)
	이자수입	공공예금이자수입(216-01), 기타이자수입(216-03), 예탁금이자수입(722-04)
	기타수입	그 외 세입과목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6. 토론요지: 없음

7. 수정안 요지

- “기금전출금”은 일반회계에서의 세출항목에 적합한 용어이고,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서 “전입금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맞추어 수정하고자 하는 것임.

8. 심사결과: 수정안 가결

9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

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304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0년 2월 24일

제안자 : 환경수자원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“기금전출금”은 일반회계에서의 세출항목에 적합한 용어이고,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서 “전입금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맞추어 수정하고자 하는 것임.

2. 주요 골자

- “기금전출금”을 “전입금”으로 함(안 제4조제1호).

3. 참고사항: 생략

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4조제1호 중 “기금전출금”을 “전입금”으로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4조(기금의 조성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</p> <p>1. 시 일반회계 출연금</p> <p>2. ~ 7. (생략)</p>	<p>제4조(기금의 조성)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기금전출금</p> <p>2. ~ 7. (현행과 같음)</p>	<p>제4조(기금의 조성)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전입금</p> <p>2. ~ 7. (개정안과 같음)</p>
<p>제7조(기금의 운용·관리)</p> <p>① ~ ② (생략)</p> <p>③ 기금운용관은 담당 실·국 본부장으로 하고 분임기금 운용관은 담당과장으로 하며, 기금출납원은 담당사무관으로 한다. 다만, 기금관리 공무원의 사무중 지출의 원인행위(계약사무 포함) 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」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 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.</p> <p>④ 「지방재정법」 의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,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.</p> <p>⑤ ~ ⑥ (생략)</p>	<p>제7조(기금의 운용·관리)</p> <p>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사무 중 ----- ----- ----- ----- 「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」 ----- ----- 회계관계공무원 ----- ----- 을 기금관리공무원으로 ----- -----.</p> <p>④ 「지방회계법」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재무관----- ----- -----.</p> <p>⑤ ~ ⑥ (현행과 같음)</p>	<p>제7조(기금의 운용·관리)</p> <p>① ~ ⑥ (개정안과 같음)</p>

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호의 “출연금”을 “전입금”으로 한다.

제7조제3항의 단서 중 “사무중”을 “사무 중”으로 하고, “「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」”을 “「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」”으로 하며, “회계관계 공무원을 기금 관리 공무원으로”를 “회계관계공무원을 기금관리공무원으로”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「지방재정법」 의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경리관”을 “「지방회계법」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재무관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기금의 조성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</p> <p>1. 시 일반회계 출연금</p> <p>2. ~ 7. (생략)</p> <p>제7조(기금의 운용·관리)</p> <p>① ~ ② (생략)</p> <p>③ 기금운용관은 담당 실·국·본부장으로 하고 분임기금운용관은 담당과장으로 하며, 기금출납원은 담당사무관으로 한다. 다만,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중 지출의 원인 행위(계약사무 포함) 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」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 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.</p> <p>④ 「지방재정법」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,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.</p> <p>⑤ ~ ⑥ (생략)</p>	<p>제4조(기금의 조성)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전입금</p> <p>2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7조(기금의 운용·관리)</p> <p>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----- 사무 중 ----- ----- ----- 「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」 ----- 회계관계공무원을 기금관리공무원으로 ----- -----.</p> <p>④ 「지방회계법」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재무관----- ----- -----.</p> <p>⑤ ~ ⑥ (현행과 같음)</p>